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돌봄기본법안

검 토 보 고

〈 돌봄에 관한 국민의 권리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명시 등 〉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805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총괄적 검토	6
1. 제정안의 입법배경	6
2.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8
3. 총괄 검토의견	12
4.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8
III . 주요 내용별 검토	20
1. 제정안의 목적 및 기본이념 등	20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6
3. 돌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실태조사	32
4. 국가돌봄지수 및 돌봄정보관리체계	38
5. 돌봄위원회	42
6. 돌봄기금	46
7. 돌봄의 날	49

I. 개요

1.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80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6인
- (2) 제 안 일 : 2025. 10. 29.
- (3) 회 부 일 : 2025. 10. 30.

나. 제안이유

돌봄은 모든 사람이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 전주기 동안 누군가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하는 활동임. 이러한 돌봄은 개인의 인간다운 삶과 지속가능한 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임.

그런데 돌봄의 공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는 돌봄을 개인과 개별 가정이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인식하고 특히 여성에게 부여된 일이라는 잘못된 인식마저 팽배하여 왔음. 그 결과 개인과 가정의 돌봄에 대한 부담이 심화되고, 돌봄의 부담으로 인하여 사회 참여와 그 조건이 제약되는 등 다양한 부문에서 불평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초저출생·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과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돌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하지만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어서 돌봄의 수요에 비해 돌봄

인력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며, 이러한 현상은 정책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또한, 현재의 돌봄정책은 우리 사회의 돌봄체계를 어떠한 비전으로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공통의 목적과 방향이 부재한 채로 각각의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한 상황임.

기존의 돌봄정책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이를 견인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즉 돌봄과 관련한 산재된 법제도와 정책을 아우르며, 돌봄정책의 기본이념과 원칙,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일관된 비전으로 법제도와 정책이 개선·정비될 수 있도록 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로서 돌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높아짐.

이에 돌봄의 공공적 가치 인정을 기초로 돌봄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구현하고, 돌봄과 돌봄노동의 가치를 증진하는 기틀 위에서 돌봄에 관한 법제도와 정책이 통합적·효과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돌봄기본법을 제정하여 돌봄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고 돌봄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이 법의 목적을 국민의 돌봄에 대한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돌봄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

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2) 이 법의 기본이념을 돌봄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하고, 그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며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함(안 제2조).

3) 모든 국민은 생애주기 전반에서 돌봄권을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법제상·재정상·행정상의 조치 등을 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4) 돌봄정책의 기본방향을 보편성 확보, 공공성 구현, 돌봄 및 돌봄노동의 가치 증진, 통합적 제공 확대 등으로 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5) 돌봄정책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돌봄청장이 돌봄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대통령 소속 돌봄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함(안 제13조).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돌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돌봄정책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돌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7) 돌봄청장이 돌봄에 대한 수요·공급, 돌봄인력의 양성·공급 현황 등 돌봄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

- 8) 돌봄청장이 돌봄권 보장 정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국가돌봄지표와 지역돌봄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가돌봄지수와 지역돌봄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도록 함(안 제18조).
- 9) 대통령 소속 돌봄위원회를 설치하고, 돌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운영 지원 및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 10) 국가는 돌봄정책 추진의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돌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돌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 11) 돌봄청장이 돌봄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도록 함(안 제26조).
- 1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돌봄인력의 양성과 공급,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7조).
- 1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돌봄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정책 추진에 민간부문이 조화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협력하도록 하고, 돌봄의 질 제고와 돌봄노동자의 권익 향상 및 공정한 이익 공유를 위하여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 14) 매년 10월 29일 및 해당 일이 속한 1주일을 돌봄의 날 및 돌봄 주간으로 지정하고, 돌봄인력 양성체계 등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며, 돌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위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03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08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07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총괄적 검토

1. 제정안의 입법 배경

□ 우리 사회는 소득수준 향상과 급격한 인구고령화 등으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공백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됨에 따라 돌봄의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2025년 10월 29일 국제돌봄의 날을 맞아,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2025 돌봄행진’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이 돌봄을 국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돌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였음.

□ 돌봄은 기본적으로 사적 영역의 문제로 인식되었으나, 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공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정책 의제로 주목받기 시작하였고²⁾, 이후 사적 서비스와 공적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해왔음.

팬데믹(COVID-19) 이후, 돌봄 시설 및 서비스의 폐쇄로 인하여 공적 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개인의 재산 수준에 따라 이용되는 사적 서비스 체계에 의존하게 되면서 개인간 돌봄 격차가 점점 커지게 되었는데, 정부는 돌봄 관련 수당 및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으나 대부분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여성위원회, “코로나19시대 돌봄노동의 가치와 사회적 대화”, 2021.7.7., 국회 여성아동 인권포럼, 공공연대노동조합, “코로나19시대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체계 개선 및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국회토론회”, 2020.12.17.

2) 마경희, “돌봄의 정치적 윤리: 돌봄과 정의의 이원론을 넘어”, 「한국사회정책」 제17권제3호, 2010

못하는 상황에서는 돌봄공백을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었음³⁾.

- 이와 같은 대응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을 수 있지만, 돌봄책임이 개별 가구에게 있다고 보아 돌봄을 단순한 선택적 서비스의 하나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인간은 생애 전반에 걸쳐 일정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돌봄의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돌봄을 하나의 복지서비스로 보기보다는 삶의 필수 영역으로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 볼 필요가 있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돌봄을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고 사회구성원의 규모 등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제정안은 돌봄을 단순한 복지서비스나 경제활동의 한 형태로 한정하거나 아동·노인 등 특정 계층 및 장애·보육 등 특정 상황을 전제로 한 제한적인 도움으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인간 존엄과 사회 통합을 위한 핵심 가치이자 모든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재정립 하려는 취지에서,

돌봄을 국민 개개인의 권리이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임을 명확히 하여, 돌봄을 주고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기반 조성을 위하여 돌봄정책기본계획, 돌봄지수, 돌봄기금 등 기본적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손지현, “기본권으로서 돌봄에 대한 고찰: 돌봄환경 변화에 따른 돌봄기본법 제정 필요의 관점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3권제2호, 2022

2.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 제정안은 총 5장, 3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총칙)은 제정안의 목적과(안 제1조), 기본이념(안 제2조), 돌봄·돌봄노동자·돌봄제공기관·돌봄정책·무급돌봄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안 제3조), 돌봄에 관한 권리(안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5조), 국민 및 사업주 등의 책무(안 제6조),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7조)를 규정하고 있음.
- 제2장(돌봄정책의 기본방향)은 모든 국민이 돌봄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과(안 제8조), 돌봄의 보편성 확보 및 차별금지(안 제9조), 돌봄의 공공성 구현(안 제10조), 돌봄과 돌봄노동의 가치 증진(안 제11조), 돌봄의 통합적 제공 확대(안 제12조)를 규정하고 있음.
- 제3장(돌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은 돌봄정책 기본계획, 지역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관련 업무의 협조(안 제16조) 및 실태조사(안 제17조)를 규정하고, 돌봄 제공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국가돌봄지수를 개발·보급하도록 하고(안 제18조), 돌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지원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사무기구를 두도록 하며(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안 제22조)를 규정하고 있음.
- 제4장(돌봄기금의 설치 및 운용)은 돌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23조), 기금의 용도 및 운용·관리(안 제24조·제25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제5장(보칙)은 돌봄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안 제26조)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27조), 돌봄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안 제28조), 돌봄정책에 관하여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협력(안 제29조)을 하도록 규정하며,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하고(안 제30조), 국제교류의 활성화(안 제31조) 및 돌봄정책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안 제32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의 조문 구성 >

장 구성	조문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돌봄에 관한 권리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	국민 및 사업주 등의 책무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돌봄정책의 기본방향	제8조	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제9조	돌봄의 보편성 확보 및 차별금지
	제10조	돌봄의 공공성 구현
	제11조	돌봄과 돌봄노동의 가치 증진
	제12조	돌봄의 통합적 제공 확대
제3장 돌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13조	돌봄정책 기본계획
	제14조	돌봄정책 지역계획
	제1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16조	업무의 협조
	제17조	실태조사
	제18조	국가돌봄지수
	제19조	돌봄위원회의 설치·운영
	제20조	분과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제21조	위원회의 사무기구
	제22조	국회보고
제4장	제23조	돌봄기금의 설치

장 구성	조문	주요 내용
돌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24조	기금의 용도
	제25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5장 보칙	제26조	돌봄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제27조	돌봄인력의 양성 등
	제28조	조사 및 연구
	제29조	민관협력
	제30조	돌봄의 날
	제31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제32조	돌봄정책 활성화 지원

□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의 권리로서 돌봄권 정립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그리고 돌봄정책 기반 마련 등이 있음.

□ 우선, 제정안은 돌봄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하고, 그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며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음.

특히, 모든 국민은 성별·연령·신앙·사회적 신분·가구 형태·거주 지역·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돌봄권 보장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제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양질의 돌봄을 충분히 받을 권리를 규정함과 동시에 일과 생활, 휴식을 균형 있게 유지하며 가족 또는 그 밖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돌볼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음으로,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면서, 법제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돌봄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돌봄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돌봄의 공공적 가치와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돌봄과 돌봄제공기관의 공공성 실현 방안을 마련하고, 돌봄과 돌봄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며,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방안 및 무급돌봄 제공자의 불이익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제정안은 돌봄청을 통해 돌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의 돌봄 제공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국가돌봄지표를 개발·보급하며 이를 이용하여 돌봄권 보장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돌봄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도록 하고,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돌봄기금을 마련하여 돌봄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대통령 소속으로 돌봄위원회를 두어 돌봄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돌봄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그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국제 돌봄의 날인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총괄 검토의견

- 인간은 누구나 생애 전반에 걸쳐 일정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돌봄 의존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돌봄의존성은 특정인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의 삶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돌봄을 특정 대상에 대한 복지서비스로 보기 보다는 삶의 필수 영역으로서 일종의 권리로 볼 필요가 있음.
- 이처럼 돌봄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과 행복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라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⁴⁾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로 볼 수 있을 것⁵⁾이고,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돌봄에 관한 국민의 권리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측면에서 「돌봄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돌봄 및 무급돌봄 등의 정의 및 범위가 넓어서 법률의 규율 범위가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돌봄을 비롯한 복지서비스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기존 법률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돌봄을 하나의 복지서비스로 한정하는 인식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로 재정립하려는 취지에서, 돌봄을 안전 관리, 의식주 관리, 신체적·정신적 활동 지원, 성장발달 지원, 생활

4) 「대한민국 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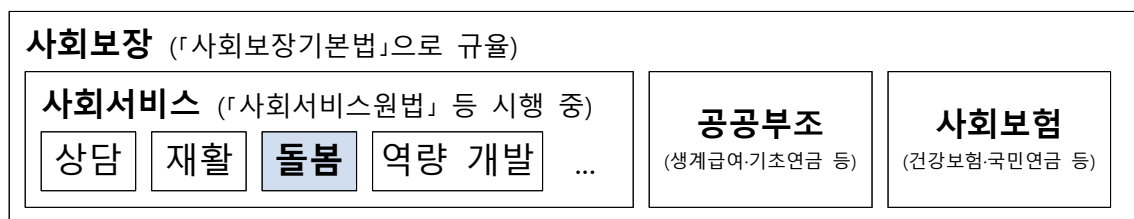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5) 김희강, “돌봄: 헌법적 가치”, 「한국사회정책」 제25권제2호, 2018

보조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삶을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아우르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돌봄을 사회서비스⁶⁾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돌봄의 개념이 기존 법률과 적정히 조화될 수 있도록 법체계 전반에 대한 정합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돌봄·사회서비스·사회보장의 개념 및 범위 >



자료: 보건복지부

특히, 정부는 돌봄정책을 산모·신생아, 노인, 아동, 장애인 등 특정 계층이나 상황을 전제로 추진하는 등 대상 중심으로 돌봄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돌봄을 보편적인 권리로 이해하는 제정안과의 접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보편성과 대상 특수성을 아우를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정부의 주요 돌봄 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일상돌봄·긴급돌봄서비스 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등이 있고,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및 교육부의 영유아보육(어린이집)과 초등돌봄(늘봄학교) 등이 있음.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주요 돌봄사업 관련 소관 현황 >

소관 부처	소관 부서	사업명	근거법
복지부	출산정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모자보건법
	사회서비스사업과	일상돌봄서비스*	-
	사회서비스사업과	긴급돌봄서비스*	-
	노인정책과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노인복지법
	요양보험제도과·요양보험운영과	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법
여가부	가족문화과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지원법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보육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돌봄학교정책과	초등돌봄** (돌봄학교)	-

* 일상돌봄·긴급돌봄서비스는 바우처 방식의 사업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근거해 운영되나 직접적인 사업 근거 조문은 없음.

** 초등돌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33)이 2025.7.14.자로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 둘째, 돌봄청 및 돌봄기금의 경우 정부 조직개편 및 다른 법률의 개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808)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청을 신설하여 돌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돌봄정책 등을 운영하고,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마련된 돌봄기금을 운용·관리하도록 하여 돌봄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등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우선, 돌봄청의 신설은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의 소관사무를 분장하여 새로운 중앙행정기관을 만드는 것으로, 정부의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임.

-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돌봄청 신설 시 기존 인원을 활용하는 것 외에 약 34명의 인원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매년 약 36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보수	2,880	2,949	3,019	3,092	3,166	15,106
기관부담금	378	389	401	414	427	2,008
기본경비	213	218	223	229	234	1,118
자산취득비	183	0	0	0	0	183
합계	3,653	3,556	3,644	3,734	3,827	18,415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돌봄청 소관 사무 수행 인원 >

부처	기구	주요 기능	정원(명)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1국 1관 6과)	○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총괄 ○ 유치원·어린이집 설립 및 운영 지원 ○ 영유아 교원 양성, 정원·인사 관리 ○ 영유아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유치원 방과후·돌봄 운영 지원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추진	65
	늘봄학교정책과 (1과)	○ 늘봄학교, 중등 방과후 학교 운영	14
	계		79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1실 3관 11과)	○ 사회복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취약계층 지원 ○ 고독사 예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 국민연금, 기초연금	116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1실 3관 14과)	○ 아동복지, 보호대상 아동 보호, 아동학대 방지 ○ 노인정책, 노인일자리, 장기요양보험, 노인건강 ○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161
	사회보장위원회	○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등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24

부처	기구	주요 기능	정원(명)
	사무국 (1국 3과)		
	장애인정책국 (1국 5과)	○ 장애인 복지, 인권 및 학대 대응, 장애인일자리,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건강	48
	계		349
고용 노동부	고용문화개선 정책과 (1과)	○ 가사근로자1) 고용개선 정책 개발 및 지원사업 운영 ○ 가사근로자법 및 하위법령 총괄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운영 ○ 가사서비스 인증제도 운영 및 활성화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 및 실태조사 ○ 가사서비스 관련 전산시스템(가사랑) 구축·운영	2
여성 가족부	가족문화과 (1과)	○ 아이돌봄 지원 정책 총괄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아이돌보미 노무 관리 ○ 아이돌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13
	가족정책과 (1과)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및 민관협력	1
	청소년활동 진흥과 (1과)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개발·지원	2
	계		16
총계			44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2213808) 비용추계서.

또한, 돌봄업무의 경우 다양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 분산되어 있어 이를 총괄적으로 조정·연계할 필요가 있고 보건복지부 내 각종 보건·복지 정책과도 연계할 필요가 있는데, 조직으로서의 ‘청’은 일반적으로 행정각부의 소관사무 중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집행적인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다는 점에서, 돌봄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한편, 돌봄기금의 경우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2213803)에 따라 근거를 마련하여 설치·운용되는 것으로, 기금의 재원 및 용도의 적절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금 신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심사⁷⁾ 및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개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동 제정안의 내용도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돌봄기본법안」(정춘생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2210878)이 발의되어 2025년 6월 18일자로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7)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③ (생략)

4.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돌봄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돌봄의 개념·범위 및 구성요소 등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는 없는 상황이고, 조문을 통해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돌봄기금을 통한 지원’ 등 행정·재정적 조치가 수반되는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선행 논의가 필요함.

무급돌봄의 경우 자원봉사와 같이 친밀하지 않은 이에 의한 대가 없는 돌봄은 배제되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포괄하는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실태조사, 국가돌봄지수 등 실효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청’은 행정각부의 소관사무 중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집행적인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장하기 위해 설치될 수 있는데, 부처·지자체로 분산된 돌봄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협업이 필요한바, ‘청’이 수행할 기능으로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함. 돌봄 관련 재정지출 증가로 중장기적인 재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별도 기금 신설은 각 사업·제도별로 운영 중인 현행 예산 구조, 재정당국의 입장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재정경제부) 세법이 아닌 개별법에 세제지원 관련 사항을 정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어 삭제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 개별 법률에 ‘돌봄의 날’(매년 10.29.)에 대한 기념일을 지정하는 것은 주관부처에서 정책적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유관기관 단체 의견수렴 등)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 등이 없는지,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 돌봄노동자의 권익 향상 및 돌봄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실시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의미함.

□ (국가데이터처) 통계법 제27조의2는 승인통계의 공표 전 외부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돌봄 실태조사가 통계법상 승인통계로 관리되는 경우, 공표 전에 외부 위원들이 포함된 위원회에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통계법 규정과 충돌 우려가 있으므로, 통계법상 사전제공 금지 규정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결과 공표 후 돌봄 위원회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Ⅲ. 주요 내용별 검토

1. 제정안의 목적 및 기본이념 등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돌봄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돌봄정책의 방향과 추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안 제1조),

돌봄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하고, 그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며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는 한편(안 제2조),

돌봄·돌봄노동자·돌봄제공기관·무급돌봄 등을 정의하면서(안 제3조),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돌봄을 받을 권리와 가족 등을 돌볼 권리가 있고(안 제4조), 성별·연령·신앙·사회적 신분·가구 형태·거주지역·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돌봄권 보장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하며(안 제9조제2항), 동 법률이 돌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함을 명시함(안 제7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돌봄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돌봄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돌봄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하고, 그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며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이란 아동, 청년, 중·장년, 노인, 장애인, 환자, 출산을 전후한 여성 및 가사 지원이 필요한 가구원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전 관리, 의식주 관리, 신체적·정신적 활동 지원, 성장발달 지원, 생활 보조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돌봄노동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돌봄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돌봄제공기관”이란 제2호의 돌봄노동자로 하여금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는 기관 및 사업자(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알선·중개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이용자”란 돌봄노동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5. “무급돌봄”이란 가족, 동거인 및 그 밖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돌봄정책”이란 돌봄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그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돌봄에 관한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생애주기 전반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제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양질의 돌봄을 충분히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일과 생활, 휴식을 균형 있게 유지하며 가족 또는 그 밖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돌볼 권리를 가진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돌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돌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돌봄의 보편성 확보 및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돌봄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가구 형태, 거주지역,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돌봄권 보장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나. 검토의견

□ 제정안은 돌봄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에게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양질의 돌봄을 충분히 받을 권리와 가족 또는 그 밖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돌볼 권리가 있음을 표명하며, 동 법률이 돌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기본법임을 명시하고 있음.

□ 인간은 생애 전반에 걸쳐 일정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돌봄의존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돌봄의존성은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의 삶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돌봄을 하나의 복지서비스로 보기보다는 삶의 필수영역으로서 보편적인 권리로 볼 필요가 있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돌봄을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 사회적 유대를 가능하게 하고, 사회구성원의 규모 등을 안정적으로 지속·유지시켜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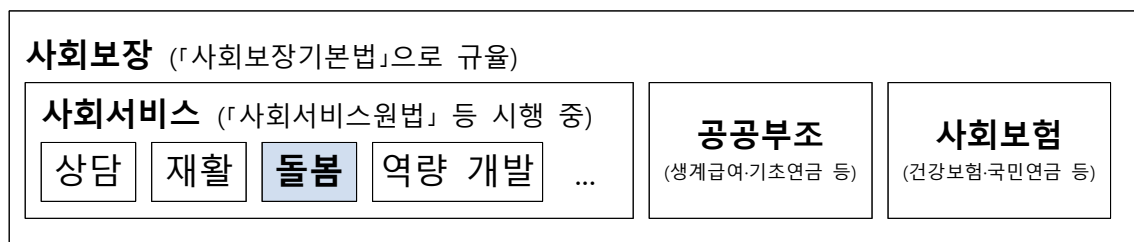
돌봄에 관한 국민의 권리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돌봄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돌봄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은 「돌봄기본법」의 위상과 관련하여 돌봄 및 무급 돌봄 등에 대한 정의가 다소 추상적인 용어로 규정되어 법률의 규율 범위가 다소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 법률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돌봄의 개념 및 범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회적 합의는 부재한 상황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⁸⁾에서는 돌봄을 사회보장의 하나인 사회서비스의 한 가지 형태로 정의하고 있고,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절차, 위원회 및 기본계획 등 포괄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⁹⁾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¹⁰⁾, 그리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¹¹⁾등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규율하고 있음.

< 돌봄·사회서비스·사회보장의 개념·범위 >



자료: 보건복지부

8)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9)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0)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1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정안은 돌봄을 인간의 생애 전반에 걸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취약성과 의존성에 따른 필요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전 관리, 의식주 관리, 신체적·정신적 활동 지원 등으로 정의하면서, 하나의 복지서비스로 한정하는 인식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로 재정립하려는 취지로서,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돌봄을 상담, 재활,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과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사회서비스’로 정의하고, 이를 관련 법률에서 인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서비스에 관한 법 체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외에도, 돌봄과 관련된 법률에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이돌봄 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2026년 3월 26일 시행 예정),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 등이 있음.

- 한편, 그 밖의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도 무급돌봄에 포함되는데, 친밀한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자원봉사 등 친밀하지 않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은 규율범위에 포함되지 못하여 자원봉사자 등이 보호 및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돌봄 관련 법률 현황 >

대상	법률	돌봄 관련 주요 내용	비고
일반	건강가정기본법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 지원 등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등	2026.3.26. 시행 예정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통합지원 대상자* 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말기 돌봄까지 필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통합지원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과 보호자 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 등	2026.3.27. 시행 예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아동	아동복지법	아동(18세 미만인 사람) 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	
	아이돌봄 지원법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12세 이하 아동) 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영유아보육법	영유아(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지원(돌봄 지원 포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인 등) 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기반 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서비스 다양성 확보	2027.3.19. 시행 예정
노인	노인복지법	홀로 사는 노인 에 대한 방문요양과 돌봄, 노인학대금지 등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들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 “통합지원 대상자”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돌봄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안 제5조), 돌봄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통해 돌봄권을 보장하고(안 제9조 및 제10조),

돌봄과 돌봄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이용자의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돌봄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이외에도, 돌봄에 따르는 차별 금지(안 제9조제2항), 돌봄정책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안 제13조 및 제15조), 국회에 대한 보고(안 제22조), 돌봄인력의 양성 및 공급(안 제27조), 돌봄정책 수립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안 제28조), 민간부문의 조화로운 참여를 위한 소통 및 협력(안 제29조), 돌봄의 날 지정 및 운영(안 제30조), 돌봄 관련 국제교류의 활성화(안 제31조) 등을 규정함.

제1장 총칙 및 제2장 돌봄정책의 기본방향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돌봄에 관한 권리(이하 “돌봄권”이라 한다)를 보장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장 총칙 및 제2장 돌봄정책의 기본방향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돌봄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의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돌봄의 제공주체와 이용자의 유형 및 특성,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① 돌봄정책은 인구구조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수립·시행하며, 모든 국민이 보다 나은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돌봄정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돌봄제공기관·돌봄노동자·이용자·무급돌봄 제공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제9조(돌봄의 보편성 확보 및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돌봄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가구 형태, 거주지역,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돌봄권 보장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10조(돌봄의 공공성 구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공공적 가치와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돌봄과 돌봄제공기관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돌봄과 돌봄노동의 가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과 돌봄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무급돌봄 제공자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돌봄의 통합적 제공 확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이 이용자의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돌봄을 통합하여 제공할 때에는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돌봄정책 기본계획) ① 정부는 돌봄정책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돌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돌봄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19조에 따른 돌봄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장 총칙 및 제2장 돌봄정책의 기본방향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돌봄의 수요와 공급 전망에 관한 사항
5. 돌봄노동자 및 돌봄 분야 종사자(이하 “돌봄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권익 개선에 관한 사항
6. 돌봄제공기관의 설치와 운영 전망에 관한 사항
7. 돌봄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8. 돌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돌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돌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안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돌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국가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돌봄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업무의 협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지역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돌봄청장은 기본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돌봄 관련 계획 및 정책,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장 총칙 및 제2장 돌봄정책의 기본방향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국회보고) 정부는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돌봄인력의 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 및 연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및 그 변화에 대응하는 돌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민관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돌봄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정책 추진에 민간부문이 조화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돌봄의 질 제고와 돌봄노동자의 권익 향상 및 돌봄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실시할 수 있다.

제30조(돌봄의 날) ① 국가는 돌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하며, 돌봄의 날이 속한 1주일을 돌봄 주간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공급 및 돌봄인력 양성체계의 국제 수준으로의 발전 등을 위하여 돌봄과 관련한 국제기구·국제회의 참여 및 정보 교환 등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32조(돌봄정책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돌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제정안은 돌봄권을 모든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로 보면서, 이에 대하여 돌봄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성 확보, 돌봄에 따르는 차별 금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의무와 노력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돌봄의 필수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공적체계를 통해 돌봄을 주고 받는 관계를 보호·진흥하고 돌봄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사회적·경제적 여건과 변화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돌봄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볼 수 있음.
- 다만, 제정안 제11조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무급돌봄 제공자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무급돌봄으로 인한 불이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보다 명확히할 필요가 있음.

일반적으로 무급돌봄 제공자의 불이익이라 함은 돌봄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기회비용 등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불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어디까지 불이익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의 내용이 명확하게 설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무급돌봄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여 모호한 표현을 줄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²⁾

- 한편, 제정안은 국가와 정부라는 표현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주체인 국가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는 정부에 부여하기보다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주체인 돌봄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12) 경제적 측면에서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22조의 2에 따른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과,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에 따른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이하 생략)

제22조의4(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22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3. 돌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실태조사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정부가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면서, 돌봄청장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고(안 제13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안 제15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돌봄청장으로 하여금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안 제1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돌봄정책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4조).

제3장 돌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13조(돌봄정책 기본계획) ① 정부는 돌봄정책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돌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돌봄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19조에 따른 돌봄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돌봄의 수요와 공급 전망에 관한 사항
5. 돌봄노동자 및 돌봄 분야 종사자(이하 “돌봄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권익 개선에 관한 사항
6. 돌봄제공기관의 설치와 운영 전망에 관한 사항
7. 돌봄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8. 돌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돌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장 돌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돌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돌봄정책 지역계획)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돌봄정책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사는 제출받은 시·군·구 지역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해당 시·도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돌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돌봄청장 또는 시·도사는 지역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돌봄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안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돌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국가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돌봄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업무의 협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지역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돌봄청장은 기본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돌봄 관련 계획 및 정책,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돌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실태조사) ① 돌봄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제19조에 따른 돌봄위원회에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1. 돌봄에 대한 수요 및 공급 현황(이용자 유형별·지역별 현황 및 무급돌봄 현황을 포함한다)

2. 돌봄인력의 양성 및 공급 현황

3. 돌봄인력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이직·퇴직,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노동권 등 권리보장 현황

4. 돌봄제공기관의 부문별, 유형별, 지역별 설치·운영 현황

5. 그 밖에 돌봄청장이 정하는 돌봄 실태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② 돌봄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법인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제정안은 돌봄청장으로 하여금 돌봄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안을 5년마다 작성하도록 하고, 돌봄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돌봄정책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돌봄청장으로 하여금 돌봄에 대한 수요 및 공급 현황, 돌봄인력의 양성 및 공급 현황 등에 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돌봄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다른 복지 정책 및 사업과의 조화로운 연계를 위하여 돌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인 돌봄서비스는 다양한 정부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도 연도별 시행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돌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돌봄은 기본적으로 돌봄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여러 사회 보장제도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사회 보장기본법」 제16조¹³⁾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서비스

13)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¹⁴⁾에 따른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유사입법례로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¹⁵⁾은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 있음.

1.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
6. 사회보장 전달체계
7. 그 밖에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기본계획은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4)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서비스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별 사회서비스의 실태 파악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 2의2.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
3.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및 실행 방안
4.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5.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6.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 보장 방안
7.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
8.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평가 및 개선 방안

9.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서비스 강화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15)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
2. 통합지원 인프라·서비스 확충 방안
3. 통합지원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통합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 방안
4. 통합지원을 위한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5. 통합지원과 관련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

7.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통합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2.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④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또한, 돌봄청장이 작성한 기본계획안은 돌봄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도록 하면서,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돌봄정책 기본계획이 중앙 행정기관의 시행계획 및 시·도지사의 지역계획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 및 중요성은 크다고 할 것이지만, 돌봄위원회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하여 중앙 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된다는 점¹⁶⁾에서 돌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16) 「돌봄기본법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805)

제19조(돌봄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돌봄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돌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돌봄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돌봄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국가돌봄지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돌봄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2. 돌봄이용자·돌봄노동자·돌봄제공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돌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4. 국가돌봄지수 및 돌봄정보관리체계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돌봄청장으로 하여금 국가의 돌봄권 보장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돌봄의 수요·공급 상황, 돌봄의 공공성 실현 정도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돌봄지표를 개발·보급하도록 하고, 돌봄지표를 이용하여 돌봄권 보장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돌봄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도록 하며(안 제18조),

국민에게 돌봄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공급, 돌봄인력·돌봄제공기관·이용자 현황 등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26조).

제3장 돌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및 제5장 보칙

제18조(국가돌봄지수 등) ① 돌봄청장은 국가의 돌봄권 보장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돌봄의 수요·공급 상황, 돌봄의 공공성 실현 정도, 돌봄노동자의 근무환경 및 무급돌봄의 제공실태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돌봄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돌봄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돌봄지표를 이용하여 돌봄권 보장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돌봄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③ 돌봄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돌봄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돌봄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돌봄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돌봄권 보장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돌봄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④ 돌봄청장은 국가돌봄지수 및 지역돌봄지수 조사 결과, 돌봄권 보장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3조제4항에 따른 돌봄과 관련된 계획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돌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및 제5장 보칙

⑤ 돌봄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돌봄지표 및 지역돌봄지표에 관한 각 지표별 통계와 지표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국가돌봄지수, 제3항에 따른 지역돌봄지수의 내용 및 조사·공표의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돌봄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① 돌봄청장은 국민에게 돌봄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공급, 돌봄인력·돌봄제공기관·이용자 현황 등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이하 “돌봄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돌봄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돌봄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돌봄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돌봄정보관리체계가 국민의 돌봄 이용 또는 그 밖의 돌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사업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종류, 돌봄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돌봄지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돌봄’이라는 개념으로 여러 사업을 포괄한 통계·지표를 생산하고 있지는 않고, 개별 사업 단위로 제공기관 및 종사자·대상자 수 등을 파악하고 있음.

< 돌봄 관련 통계 자료 >

(단위: 개, 명)

구 분	계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질환	노숙인	결핵·한센	자활	복지관
시설수	37,790	25,929	6,489	4,074	421	138	6	250	483
종사자	549,695	448,702	34,673	44,802	3,892	1,949	103	2,827	12,747
대상자	278,387	222,435	12,489	27,074	9,680	6,501	208		

* 자료: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통계」 기준)

** ‘사회복지시설’ 조사 자료 기준인바, 어린이집 및 재가 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관련 시설수, 종사자 등은 제외된 수치임

- 효과적인 돌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돌봄 환경에 대한 정확한 상황 판단과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돌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일정한 통계와 지표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돌봄지표를 개발·보급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제정안은 돌봄권 보장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돌봄과 관련된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관계 기관의 장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되는지 모호하여 시·도지사 등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안 제14조제3항17)에 따르면 돌봄청장은 지역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돌봄지표에 있어서도 돌봄권 보장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돌봄정보관리체계) 제정안은 국민에게 돌봄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공급, 돌봄 인력·돌봄제공기관·이용자 현황 등에 관한 돌봄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돌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돌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보편적 권리로서 돌봄권에 대한 인식 수준을 향상하고 안 제6조18)에 따른 국민의 책무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며, 민간 분야의 연구 등을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돌봄정보관리체계를 통해 돌봄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17) 「돌봄기본법안」

③ 돌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돌봄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8) 「돌봄기본법안」

제6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상호연대를 통한 돌봄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돌봄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5. 돌봄위원회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돌봄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돌봄위원회를 두고(안 제19조), 그 운영 및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안 제21조).

제3장 돌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제19조(돌봄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돌봄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돌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돌봄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돌봄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국가돌봄지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돌봄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돌봄이용자·돌봄노동자·돌봄제공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돌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2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돌봄청장과 제4항제3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분과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별로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제정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돌봄위원회를 두고, 돌봄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돌봄이용자·돌봄노동자·돌봄제공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돌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고 있음.

돌봄위원회는 돌봄정책 기본계획, 돌봄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돌봄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국가돌봄지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심의함.

- 「정부조직법」 제5조¹⁹⁾에 따르면, 행정기관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19) 「정부조직법」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5조에서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경우에 필요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²⁰⁾.

- 돌봄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사무 중 일부를 부여받아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으므로 자문위원회로 볼 수 있음.

□ 돌봄을 모든 인간이 생애 전반에 걸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보편적인 취약성과 의존성에 따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면, 그에 관련된 정책은 지속적이고 신중한 추진 및 조정이 필요하고 관련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원회 설치 요건에는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 또한, 돌봄이용자·돌봄노동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돌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돌봄 관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돌봄정책에 관하여 돌봄제공기관·돌봄노동자·이용자 등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시행되어야 한다는 안 제8조제2항²¹⁾에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돌봄정책의 효과성 및 수용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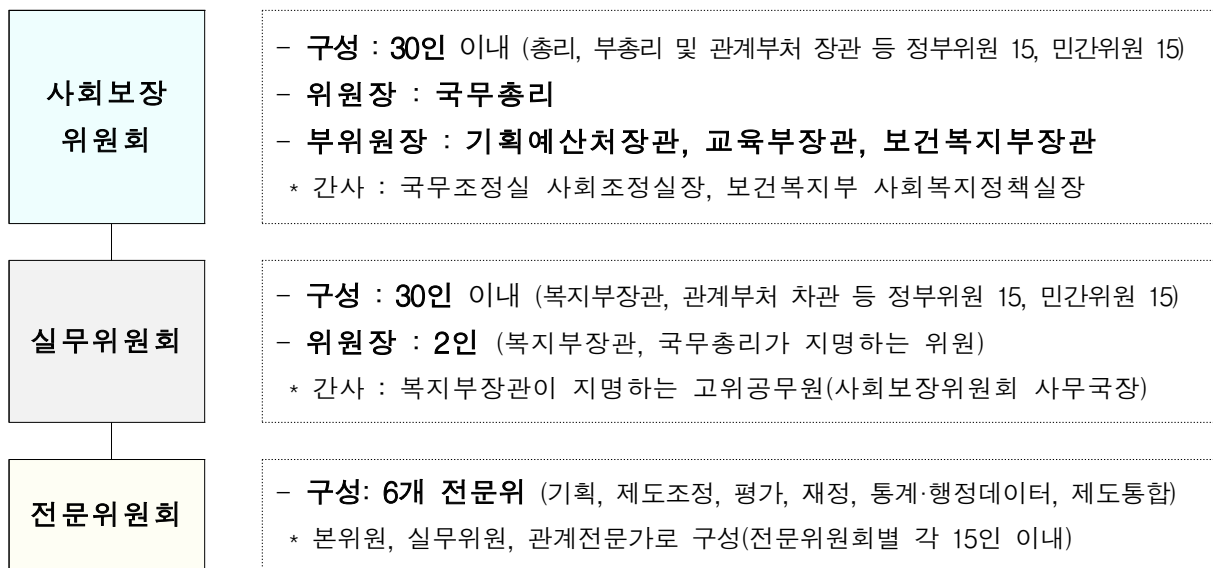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21) 「돌봄기본법안」

제8조(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② 돌봄정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돌봄제공기관·돌봄노동자·이용자·무급돌봄 제공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 다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는데, 돌봄도 사회보장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해당 위원회를 통해 돌봄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 개요 >



자료: 보건복지부

6. 돌봄기금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돌봄권 보장을 위한 사업의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돌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돌봄청장이 운용·관리하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4장 돌봄기금

제23조(돌봄기금의 설치) ① 국가는 돌봄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4.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에 따른 과징금 및 제119조에 따른 과태료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에 따른 과징금 및 제69조에 따른 과태료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돌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돌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돌봄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2. 생애 전주기에 걸친 돌봄정책의 추진
3. 돌봄의 질 제고 및 제공 확대
4. 제26조에 따른 돌봄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5. 돌봄인력의 권익 향상 및 양성
6. 돌봄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사업개발

7. 돌봄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8. 돌봄정책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
 9. 돌봄제공기관 육성을 위한 사업 및 운영 지원
 10.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11. 그 밖에 돌봄정책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제2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돌봄청장이 운용·관리한다.
- ②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돌봄청장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 ③ 돌봄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하는 특정자금으로,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예산의 경직성을 벗어나 탄력적이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조성하는 것임²²⁾.
- 제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2213803)을 통한 기금 관련 근거 마련을 전제로,
- ‘돌봄기금’을 설치하여 돌봄청장이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정부의 출연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돌봄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돌봄의 질 제고 및 제공 확대, 돌봄인력의 권익 향상 및 양성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임.

22)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제14조²³⁾에 따르면, 기금 신설의 타당성은 ①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②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③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④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등의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 제정안에 따르면, 돌봄권은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로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국가의 출연금 등으로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고, 재난이나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등 급변하는 돌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측면도 있음.
- 다만, 기금 신설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심사 및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따라 동 제정안의 내용도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3)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7. 돌봄의 날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돌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하고 돌봄의 날이 속한 1주간을 돌봄 주간으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제5장 보칙

- 제30조(돌봄의 날) ① 국가는 돌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하며, 돌봄의 날이 속한 1주간을 돌봄 주간으로 지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2023년 6월, 국제연합(UN)은 매년 10월 29일을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International Day of Care and Support)로 지정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는데, 이는 돌봄경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인권을 존중하면서 성인지적이고, 장애포용적이며, 고령친화적인 돌봄 및 지원체계를 조성하고, 무급 돌봄 및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유엔 여성기구(UN WOMEN)는 2024년 10월 29일에 ‘돌봄 시스템 변화: 베이징+30의 맥락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주제로 행사와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은 10월 29일을 돌봄 노동과 돌봄권을 공공재 및 인권으로 규정하는 글로벌 행동의 날로 활용하며 돌봄노동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고,

국내 시민사회에서도 해당 일을 계기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제정안은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에 맞춰, 돌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임.

- 현재 10월 29일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로서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음.

□ 현재 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별표 2]²⁴⁾를 통해 기념일의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복지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의의가 큰 날 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일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날 등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 기념일과 유사·중복되거나 그 의의나

24)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별표 2] 기념일의 지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
 - 가.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날 또는 민족정기를 널리 알리거나 호국정신의 뜻을 기리는 날
 - 나. 과학기술·경제발전·국민복지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큰 날
 - 다.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적 윤리가치의 계승·확립을 위해 국민적 인식을 같이 하는 날
 - 라.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하여 기념하고 있는 날
 - 마. 그 밖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일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날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 가. 의의나 성격이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 나. 의의나 성격이 특정 지역, 일부 집단 및 개별 이익단체 등에만 국한되는 경우
 - 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주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라. 그 밖에 민간자율성 신장이 요구되거나 순수 민간 분야의 기념일인 경우

성격이 특정 지역이나 개별 이익단체에만 국한되는 경우 등에는 지정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돌봄을 하나의 복지서비스가 아닌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돌봄정책에 대한 관점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돌봄의 날을 지정하여 국민적 관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고,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에 맞춰 돌봄의 날을 지정함으로써 돌봄의 국제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민복지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 확립과 관련되어 있고 특정 지역이나 개별 이익단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기념일의 지정기준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25년 2월 28일 발의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590)²⁵⁾도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적합한 기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497

25)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590) 제4조의2(돌봄의 날) ① 돌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돌봄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